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에 있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 등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시(안 제81조 신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비실명 처리 등 형사공탁 절차 관련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나. 형사공탁서 기재사항 규정 신설(안 제82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성·가명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사건번호·사건명, 해당 검찰

청·사건번호로 규정함

다. 형사공탁서 첨부서면 관련 규정 신설(안 제83조 신설)

- 형사공탁의 관할 공탁소와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함

라.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방법으로 공고 내용 신설(안 제84조 신설)

- 공고 장소와 시기, 공고할 사항 등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 관련 규정 신설(안 제85조 신설)

-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함

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제출 및 발급사실 통지 규정 신설(안 제86조 신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사. 열람 및 증명청구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처리

근거 신설(안 제87조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후 열람·증명하도록 규정함

아. 군사법원 사건에 적용 및 위임 규정 신설(안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4.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81조부터 제8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분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

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고, 성(姓)의 공고방법은 대법원예규에 따른다.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를 제출한 사람이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u></p> <p><u>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u> <u>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u> <u>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u>

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신 설>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분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신 설>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고, 성(姓)의 공고방법은 대법원에 규에 따른다.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해당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신 설>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한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를 제출한 사람이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신 설>

수 있다.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신 설>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7624